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1. 2 선고 2020가단1481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12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11. 20. 체결된 매매계약을 17,296,39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7,296,3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김행순

별지